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

—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이병희·정성미*

I. 문제 제기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통해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차별시정제도는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2007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고, 100~299인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교적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내에서도 한편에서는 정규직화, 분리직군제 도입·하위직급의 신설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계약 해지와 파견, 용역, 도급 등을 통한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입법적 규제가 없는 외주화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노사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최근 일자리 성과의 부진을 비정규직법의 영향 때문으로 돌리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3월에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2007년 8월 조사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직후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반응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판단할 수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lbh@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있는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한편 3월 기준의 부가조사 결과를 8월 기준의 부가조사 결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고용형태별 고용변동은 2007년 3월의 부가조사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II. 비정규직 규모의 감소와 구성 변화

2008년 3월 부가조사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2008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5천 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p 하락한 35.2%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

그런데 문제는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함께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62천 명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임금고용 성과의 부진, 특히 최근 임시직 근로자의 감소가 비정규직법과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반응을 사업체규모별로, 근속년수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기간의 제한 때문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차별시정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로 나누어 고용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비정규직법이 기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규직 고용변동이 주로 신규 채용에 기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시정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체규모별(100인 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로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이미 시행된 대기업이나 시행이 예정된 중규모 기업에서 비정규직 변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고용형태별 구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2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1천 명 감소하였다. 또한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조건을 보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자'는 318천 명이 감소하여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229천 명을 기록하였다. 반면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조건이 낮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는 246천 명 증가하여 조사 이래 가장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7. 3 (A)	2008. 3 (B)	증감 (B-A)
임금근로자	14,149 [100.0]	14,584 [100.0]	14,968 [100.0]	15,351 [100.0]	15,882 [100.0]	15,731 [100.0]	15,993 [100.0]	262
정규직	9,542 [67.4]	9,190 [63.0]	9,486 [63.4]	9,894 [64.5]	10,180 [64.1]	9,958 [63.3]	10,356 [64.8]	398 [1.4p]
정규 상용직	6,184 [43.7]	6,088 [41.7]	6,413 [42.8]	6,639 [43.3]	6,931 [43.6]	6,627 [42.1]	7,302 [45.7]	675 [3.5p]
정규 임시직	3,100 [21.9]	2,844 [19.5]	2,803 [18.7]	2,926 [19.1]	2,936 [18.5]	3,080 [19.6]	2,748 [17.2]	-332 [-2.4p]
정규 일용직	259 [1.8]	258 [1.8]	269 [1.8]	329 [2.1]	313 [2.0]	252 [1.6]	306 [1.9]	54 [0.3p]
비정규직	4,606 [32.6]	5,394 [37.0]	5,483 [36.6]	5,457 [35.5]	5,703 [35.9]	5,773 [36.7]	5,638 [35.2]	-135 [-1.5p]
한시적 근로	3,013 (65.4)	3,597 (66.7)	3,615 (65.9)	3,626 (66.5)	3,546 (62.2)	3,642 (63.1)	3,249 (57.6)	-393 (-5.5p)
기간제	2,403 (52.2)	2,491 (46.2)	2,728 (49.8)	2,722 (49.9)	2,531 (44.4)	2,614 (45.3)	2,293 (40.7)	-321 (-4.6p)
계약 반복갱신	248 (5.4)	580 (10.8)	302 (5.5)	465 (8.5)	555 (9.7)	547 (9.5)	229 (4.1)	-318 (-5.4p)
계속근무 기대불가	362 (7.9)	526 (9.7)	585 (10.7)	439 (8.1)	460 (8.1)	481 (8.3)	727 (12.9)	246 (4.6p)
시간제 근로	929 (20.2)	1,072 (19.9)	1,044 (19.0)	1,135 (20.8)	1,201 (21.1)	1,232 (21.3)	1,301 (23.1)	69 (1.7p)
비전형근로	1,678 (36.4)	1,948 (36.1)	1,907 (34.8)	1,933 (35.4)	2,208 (38.7)	2,244 (38.9)	2,330 (41.3)	86 (2.5p)
파견	98 (2.1)	117 (2.2)	118 (2.1)	131 (2.4)	174 (3.1)	175 (3.0)	172 (3.1)	-3 (0.0p)
용역	346 (7.5)	413 (7.7)	431 (7.9)	499 (9.1)	593 (10.4)	584 (10.1)	617 (10.9)	33 (0.8p)
특수근로형태	600 (13.0)	711 (13.2)	633 (11.5)	617 (11.3)	635 (11.1)	643 (11.1)	601 (10.7)	-42 (-0.5p)
가정내	166 (3.6)	171 (3.2)	141 (2.6)	175 (3.2)	125 (2.2)	155 (2.7)	151 (2.7)	-4 (0.0p)
일일	589 (12.8)	666 (12.3)	718 (13.1)	667 (12.2)	845 (14.8)	915 (15.8)	940 (16.7)	26 (0.8p)

주: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안은 비정규직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3~2007년 8월, 2007~2008년 3월.

높은 수준인 727천 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평소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파트타임의 증가로 69천 명 증가한 1,301천명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비전형근로자는 86천 명 증가한 2,244천 명을 기록하였는데, 용역(33천 명) 및 일일근로(26천 명)는 증가한 반면, 특수고용(42천 명), 파견(3천 명), 가정내(3천 명) 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기간제 및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는 감소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용역·일일 등의 비전형근로자는 증가하였다. 즉, 비정규직 고용구성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이 낮은 고용형태로의 전환이 비정규직법과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3월 자료와 2008년 3월 자료를 개인별로 결합함으로써 임금근로자가 경험하는 1년간 노동이동을 추적함으로써 비정규 고용구성의 변화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²⁾.

III. 임금고용 성과 부진과 비정규직법간 관계

1. 임금근로자 증가세 대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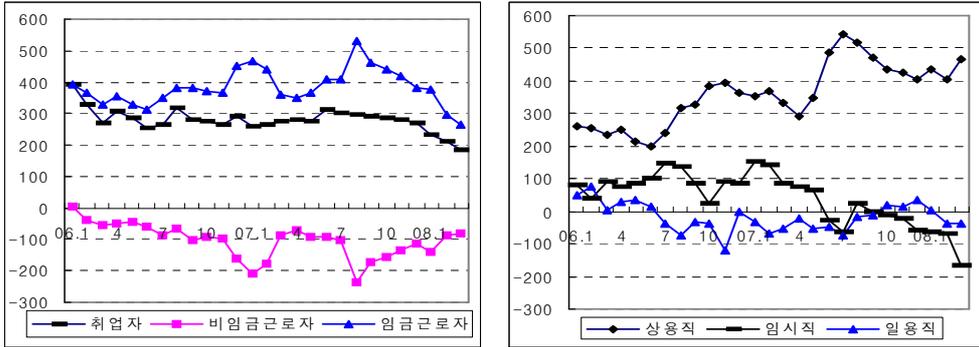
2008년 3월 취업자는 23,305천 명으로 전년 3월 대비 184천 명이 증가했다. 2007년 6월 315천 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체감경기 둔화에 따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주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내부에서는 임시직 근로자의 급감이 두드러진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임시직의 감소 현상을 비정규직법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부가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는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로 나누어 임금근로자의 증감을 보여준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등의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임시직이 감소하였다면, 비

2) 통계청에서는 가구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년월 및 인적특성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2007년 3월에 조사된 69,826명 가운데 25.8%인 18,022명만을 추적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림 1] 취업자(좌) 및 임금근로자(우)의 증감추이

(단위:천 명, %)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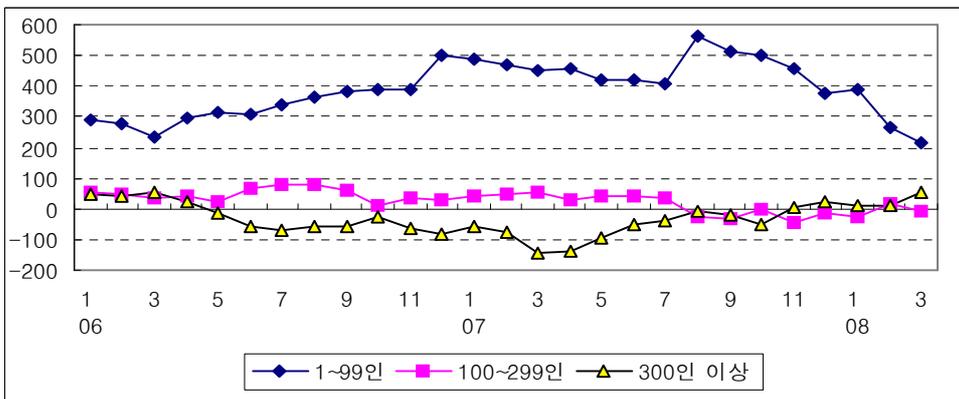
정규 임시직이 주로 감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정규 임시직이 332천 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 임시직은 오히려 167천 명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임시직 감소에는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경기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임금근로자 증가세의 둔화를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근로자의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그림 2 참조). 특히 1~4인, 10~29인 사업장이 2007년 중반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100~299인 사업장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감소 추세를 보이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007년 말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증가세의 둔화가 실적의 증가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신규 채용의 둔화 때

[그림 2] 사업체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증감 추이

(단위: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2>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증감

(단위: 천 명)

	2007. 3			2008. 3			증 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8,431.7	5,187.8	2,111.6	8,897.6	5,023.3	2,072.5	465.9	-164.5	-39.0
정규직	6,626.7	3,079.6	251.9	7,301.8	2,747.9	306.2	675.1	-331.7	54.3
비정규직	1,804.9	2,108.2	1,859.6	1,595.8	2,275.4	1,766.4	-209.1	167.2	-9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표 3> 사업체규모별 임금근로자 변동(월평균)

(단위: 천 명)

		2003. 1/4	2004. 1/4	2005. 1/4	2006. 1/4	2007. 1/4	2008. 1/4
전 체	임금근로자 순변화	304.1	446.3	241.6	362.2	424.0	311.7
	취업유출	654.1	619.5	642.6	624.6	591.5	592.1
	취업유입	958.2	1065.8	884.3	986.8	1,015.5	903.8
1~99인	임금근로자 순변화	71.6	329.1	161.9	267.7	470.1	290.6
	취업유출	597.0	556.0	583.2	566.1	538.7	541.3
	취업유입	668.6	885.1	745.2	833.9	1,008.8	831.9
100~299인	임금근로자 순변화	74.2	89.3	-2.2	47.3	47.8	-5.1
	취업유출	30.3	31.4	34.9	31.2	31.2	28.7
	취업유입	104.5	120.7	32.6	78.5	78.9	23.6
300인 이상	임금근로자 순변화	158.7	27.9	81.9	47.2	-93.9	26.2
	취업유출	26.7	32.1	24.5	27.3	21.6	22.1
	취업유입	185.4	60.0	106.4	74.5	-72.3	4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1~3월.

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임금근로자의 취업유출입 분석을 하였다³⁾. <표 3>을 보면, 취업으로부터의 유출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취업으로의 유입은 감소하였다. 즉, 최근 임금고용 성과의 부진은 실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 부진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취업 유입이 증가하여 임금근로자가 순증가하였다.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근로자가 소폭 감소한 이면에는 실직규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이전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직월이 조사 전월인 경우를 ‘취업에서 유출’로 판별하고, 임금근로자의 순변화 규모에서 취업 유출자 규모를 뺀 것을 취업으로의 유입 규모로 판별하였다.

모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취업으로의 유입이 크게 둔화하여 임금근로자가 소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신규 채용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변화

<표 4>는 사업체규모별로 고용형태별 규모 및 구성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임금 일자리가 57천 명 증가하였는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95천 명 증가, 비정규직이 38천 명 감소하였다. 그리고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 증가 현상은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차별시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100~299인의 중규모 기업에서는 임금 일자리가 9천 명 감소하였다. 정규직은 76천 명 증가했는데, 주로 정규 상용직의 증가에 기인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86천 명 감소했는데, 가정내 근로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 고용형태에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특히 기간제의 감소(-21천 명)뿐만 아니라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60천 명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임금 일자리는 215천 명 증가한 가운데 정규직에서 226천 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에서 12천 명 감소하였으나, 내부 구성은 크게 변화했다. 정규직은 정규 상용직이 483천 명 증가한 반면, 정규 임시직이 310천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가 276천 명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221천 명 감소하였으며,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가 237천 명 증가했다. 또한 용역·일일근로 등의 비전형근로자가 95천 명 증가했다.

요약하면, 비정규직 구성의 변화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과 100~299인의 중규모 기업에서 두드러진다. 정규 상용직 중심으로 정규직이 증가함으로써 정규 고용의 질이 개선된 반면, 비정규직 내부에서는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3. 신규 채용의 감소

1년 미만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구성은 신규 채용시 고용형태별 활용도를,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구성은 재직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신규로 취업한 임금근로자는 256천 명 감소한 반면,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518천 명 증가하여 최근 임금 일자리 증가의 부진이 신규 채용의 감소에 기인함을 보여준다(표 5 참조). 고용형태별로 보면, 근속 1년 미만 임금근로자의 감소는

<표 4> 사업체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

	2007. 3			2008. 3			증 감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근로자	12,366.8 [100.0]	1,563.8 [100.0]	1,800.4 [100.0]	12,581.3 [100.0]	1,554.5 [100.0]	1,857.6 [100.0]	214.5	-9.3	57.2
정규직	7,455.1 [60.3]	1,081.9 [69.2]	1,421.2 [78.9]	7,681.4 [61.1]	1,158.2 [74.5]	1,516.3 [81.6]	226.3	76.3	95.0
정규 상용직	4,280.6 [34.6]	976.4 [62.4]	1,369.7 [76.1]	4,763.7 [37.9]	1,066.2 [68.6]	1,471.9 [79.2]	483.1	89.8	102.2
정규 임시직	2,931.8 [23.7]	100.5 [6.4]	47.2 [2.6]	2,621.4 [20.8]	83.9 [5.4]	42.5 [2.3]	-310.4	-16.6	-4.7
정규 일용직	242.7 [2.0]	4.9 [0.3]	4.3 [0.2]	296.3 [2.4]	8.1 [0.5]	1.8 [0.1]	53.6	3.2	-2.5
비정규직	4,911.7 [39.7]	481.9 [30.8]	379.1 [21.1]	4,899.9 [38.9]	396.3 [25.5]	341.3 [18.4]	-11.8	-85.6	-37.8
한시적 근로	2,884.5 (23.3)	404.0 (25.8)	353.1 (19.6)	2,623.2 (20.9)	320.5 (20.6)	305.1 (16.4)	-261.3	-83.5	-48.1
기간제	2,043.2 (16.5)	296.3 (18.9)	274.6 (15.3)	1,766.8 (14.0)	275.6 (17.7)	250.8 (13.5)	-276.4	-20.7	-23.8
계약 반복갱신	391.1 (3.2)	82.0 (5.2)	73.8 (4.1)	169.7 (1.3)	21.9 (1.4)	37.2 (2.0)	-221.4	-60.2	-36.6
계속근무 기대불가	450.2 (3.6)	25.6 (1.6)	4.7 (0.3)	686.7 (5.5)	23.0 (1.5)	17.0 (0.9)	236.5	-2.6	12.3
시간제 근로	1,155.6 (9.3)	47.7 (3.0)	28.2 (1.6)	1,220.4 (9.7)	45.1 (2.9)	35.2 (1.9)	64.8	-2.5	7.0
비전형 근로	2,103.3 (17.0)	109.1 (7.0)	31.9 (1.8)	2,198.5 (17.5)	89.9 (5.8)	42.0 (2.3)	95.2	-19.3	10.1
파견	148.0 (1.2)	19.7 (1.3)	7.7 (0.4)	148.3 (1.2)	16.1 (1.0)	7.8 (0.4)	0.3	-3.6	0.1
용역	530.3 (4.3)	42.4 (2.7)	11.4 (0.6)	566.7 (4.5)	40.2 (2.6)	9.9 (0.5)	36.4	-2.2	-1.4
특수근로형태	594.2 (4.8)	37.5 (2.4)	10.8 (0.6)	565.0 (4.5)	21.9 (1.4)	14.0 (0.8)	-29.3	-15.5	3.1
가정내	151.3 (1.2)	1.6 (0.1)	1.6 (0.1)	135.1 (1.1)	5.3 (0.3)	10.5 (0.6)	-16.2	3.7	8.9
일일	902.3 (7.3)	12.0 (0.8)	0.4 (0.0)	931.2 (7.4)	7.4 (0.5)	1.7 (0.1)	29.0	-4.7	1.3

주: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안은 비정규직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표 5> 근속년수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

	2007. 3		2008. 3		증 감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임금근로자	6,053.4 [100.0]	9,677.7 [100.0]	5,797.4 [100.0]	10,195.9 [100.0]	-256.0	518.3
정규직	2,769.0 [45.7]	7,189.3 [74.3]	2,647.6 [45.7]	7,708.2 [75.6]	-121.4	519.0
정규 상용직	1,053.3 [17.4]	5,573.5 [57.6]	1,092.0 [18.8]	6,209.8 [60.9]	38.7	636.3
정규 임시직	1,528.4 [25.2]	1,551.2 [16.0]	1,315.7 [22.7]	1,432.2 [14.0]	-212.7	-119.0
정규 일용직	187.3 [3.1]	64.6 [0.7]	239.9 [4.1]	66.2 [0.6]	52.6	1.7
비정규직	3,284.4 [54.3]	2,488.4 [25.7]	3,149.8 [54.3]	2,487.7 [24.4]	-134.6	-0.7
한시적 근로	1,804.3 (29.8)	1,837.3 (19.0)	1,537.6 (26.5)	1,711.1 (16.8)	-266.7	-126.2
기간제	1,355.0 (22.4)	1,259.1 (13.0)	1,044.1 (18.0)	1,249.1 (12.3)	-310.9	-10.0
계약 반복갱신	131.1 (2.2)	415.9 (4.3)	39.2 (0.7)	189.6 (1.9)	-91.9	-226.3
계속근무 기대불가	318.2 (5.3)	162.3 (1.7)	454.4 (7.8)	272.4 (2.7)	136.2	110.0
시간제 근로	926.7 (15.3)	304.8 (3.1)	948.5 (16.4)	352.2 (3.5)	21.8	47.4
비전형근로	1,481.0 (24.5)	763.4 (7.9)	1,432.9 (24.7)	897.5 (8.8)	-48.1	134.1
파견	87.1 (1.4)	88.3 (0.9)	62.2 (1.1)	110.0 (1.1)	-24.8	21.7
용역	300.6 (5.0)	283.5 (2.9)	289.0 (5.0)	327.9 (3.2)	-11.6	44.4
특수형태근로	308.2 (5.1)	334.4 (3.5)	225.6 (3.9)	375.3 (3.7)	-82.6	40.9
가정내	109.0 (1.8)	45.5 (0.5)	96.9 (1.7)	54.1 (0.5)	-12.1	8.6
일일	887.2 (14.7)	27.5 (0.3)	898.5 (15.5)	41.8 (0.4)	11.3	14.3

주: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안은 비정규직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정규직(-121천 명)과 비정규직(-135천 명) 모두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정규 임시직(-213천 명), 기간제(-310천 명),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92천 명)의 신규 채용 감소가 두드러진다.

한편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 상용직이 636천 명 증가하였으며, 계약

<표 6> 사업체규모별·근속년수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추이

(단위: 천 명)

	2007. 3			2008. 3			증 감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년 미만>									
임금근로자	5,450.0	378.7	224.7	5,231.4	333.4	232.6	-218.7	-45.3	7.9
정규직	2,449.3	190.1	129.6	2,326.6	188.1	132.9	-122.8	-2.0	3.3
정규 상용직	823.2	129.3	100.8	847.0	135.0	110.1	23.8	5.7	9.2
정규 임시직	1,445.3	58.7	24.5	1,247.3	46.9	21.6	-198.0	-11.8	-2.9
정규 일용직	180.8	2.2	4.3	232.3	6.3	1.3	51.5	4.1	-3.0
비정규직	3,000.7	188.6	95.1	2,904.8	145.3	99.7	-95.9	-43.3	4.6
한시적 근로	1,564.4	152.3	87.6	1,345.0	105.4	87.3	-219.4	-46.9	-0.3
기간제	1,165.4	116.9	72.7	877.9	89.7	76.5	-287.6	-27.2	3.9
계약 반복갱신	103.3	16.0	11.8	36.5	0.6	2.2	-66.8	-15.4	-9.7
계속근무 기대불가	295.7	19.4	3.1	430.7	15.1	8.6	135.0	-4.3	5.5
시간제 근로	880.8	30.0	15.9	896.2	30.1	22.3	15.4	0.1	6.4
비전형근로	1,419.9	51.1	9.9	1,387.3	35.3	10.2	-32.6	-15.8	0.3
파견	77.3	8.2	1.6	57.7	4.1	0.4	-19.6	-4.1	-1.1
용역	275.0	20.0	5.6	273.4	12.8	2.8	-1.6	-7.2	-2.8
특수형태근로	291.2	14.7	2.4	210.5	9.9	5.3	-80.7	-4.8	2.9
가정내	108.0	1.1	0.0	93.7	2.3	0.9	-14.3	1.3	0.9
일일	875.6	11.2	0.4	890.1	6.7	1.7	14.5	-4.4	1.3
<1년 이상>									
임금근로자	6,916.7	1,185.1	1,575.7	7,349.9	1,221.1	1,625.0	433.2	36.0	49.4
정규직	5,005.7	891.7	1,291.6	5,354.9	970.1	1,383.4	349.2	78.3	91.7
정규 상용직	3,457.3	847.2	1,268.9	3,916.7	931.2	1,361.9	459.4	84.1	93.0
정규 임시직	1,486.5	41.9	22.7	1,374.2	37.1	21.0	-112.3	-4.8	-1.8
정규 일용직	61.9	2.7	0.0	64.0	1.7	0.5	2.1	-0.9	0.5
비정규직	1,911.0	293.4	284.0	1,995.0	251.1	241.7	84.0	-42.3	-42.4
한시적 근로	1,320.1	251.7	265.6	1,278.2	215.1	217.8	-41.9	-36.6	-47.8
기간제	877.8	179.4	201.9	888.9	185.9	174.3	11.2	6.5	-27.6
계약 반복갱신	287.8	66.0	62.0	133.3	21.3	35.0	-154.6	-44.8	-27.0
계속근무 기대불가	154.5	6.2	1.6	256.0	7.9	8.5	101.5	1.7	6.8
시간제 근로	274.9	17.6	12.3	324.2	15.0	12.9	49.4	-2.6	0.6
비전형근로	683.5	58.0	22.0	811.2	54.5	31.8	127.7	-3.5	9.9
파견	70.7	11.5	6.1	90.6	12.0	7.3	19.9	0.5	1.2
용역	255.3	22.4	5.8	293.4	27.4	7.2	38.1	5.0	1.4
특수형태근로	303.1	22.8	8.5	354.5	12.1	8.7	51.5	-10.7	0.2
가정내	43.3	0.5	1.6	41.4	3.0	9.6	-1.9	2.5	8.0
일일	26.7	0.8	0.0	41.2	0.6	0.0	14.5	-0.2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226천 명), 정규 임시직(-119천 명)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정규 상용직의 증가는 주로 근속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서 이루어진 반면, 정규 임시직의 감소는 신규 채용 및 기존 근로자 모두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 신규 채용(-198천 명) 및 기존 고용(-112천 명) 모두에서 정규 임시직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제의 감소는 신규 채용에서 나타나며, 기존 근로자의 계약 해지와 같은 형태의 기간제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감소는 주로 100인 미만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288천 명), 100~299인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27천 명)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의 감소는 신규 채용보다 근속 1년 이상인 기존 근로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 규모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특히 100인 미만 기업(-155천 명)에서 두드러진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의 증가는 주로 100인 미만 기업에서 나타나며, 신규 채용(135천 명)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102천 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은 신규 채용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기존 근로자에서 증가했다.

IV. 비정규직 구성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전환

1. 한시적 고용

비정규직 구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기간제의 대폭 감소(-321천 명), 비기간제 가운데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급감(-318천 명),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의 급증(246천 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 고용의 구성 변화는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근로조건이 열악한 고용형태로 전환 또는 대체되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표 7>은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인적·사업체 특성을 보여준다.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감소는 주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165천 명), 상용직(-220천 명)에서 발생한 반면,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주로 고졸 이하(196천 명), 임시·일용직(232천 명), 100인 미만 기업(237천 명)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인적특성에 비추어 고용형태간 대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7>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2007. 3			2008. 3			증 감			
	기간제	계약 반복갱신	계속근무 기대불가	기간제	계약 반복갱신	계속근무 기대불가	기간제	계약 반복갱신	계속근무 기대불가	
전 체	2,614.1	547.0	480.5	2,293.2	228.8	726.7	-320.9	-318.2	246.2	
학 력	초졸 이하	334.6	23.5	80.0	252.6	8.3	119.1	-82.0	-15.2	39.1
	중졸	274.5	31.9	87.9	232.3	14.6	118.3	-42.2	-17.3	30.4
	고졸	994.2	199.2	240.6	883.6	78.7	367.3	-110.6	-120.5	126.7
	전문대졸	352.0	106.0	33.1	306.1	51.5	54.2	-45.9	-54.5	21.1
	대졸	538.1	174.1	36.1	501.2	67.6	59.9	-36.9	-106.5	23.8
	대학원 이상	120.8	12.4	2.8	117.4	8.2	7.9	-3.3	-4.2	5.1
	규 모	1~4인	459.5	66.9	189.9	337.0	31.1	296.5	-122.6	-35.8
5~9인		429.8	78.4	114.2	361.2	35.5	174.1	-68.6	-42.9	59.9
10~29인		610.3	111.1	102.5	570.3	49.0	138.7	-40.0	-62.1	36.1
30~99인		543.6	134.8	43.5	498.3	54.1	77.4	-45.3	-80.6	33.9
100~299인		296.3	82.0	25.6	275.6	21.9	23.0	-20.7	-60.2	-2.6
300인 이상		274.6	73.8	4.7	250.8	37.2	17.0	-23.8	-36.6	12.3
지 위	상용직	1,277.2	379.5	0.5	1,201.3	159.6	14.5	-75.9	-220.0	14.0
	임시직	721.8	150.7	363.2	698.0	63.5	528.7	-23.8	-87.3	165.5
	일용직	615.1	16.7	116.8	394.0	5.7	183.5	-221.1	-11.0	66.7
근 속	1년 미만	1,355.0	131.1	318.2	1,044.1	39.2	454.4	-310.9	-91.9	136.2
	1~2년 미만	395.3	98.4	83.4	395.0	37.2	140.7	-0.3	-61.2	57.3
	2~3년 미만	210.0	75.4	40.8	226.0	36.4	45.3	16.1	-39.0	4.5
	3년 이상	653.9	242.1	38.2	628.1	116.0	86.4	-25.8	-126.1	4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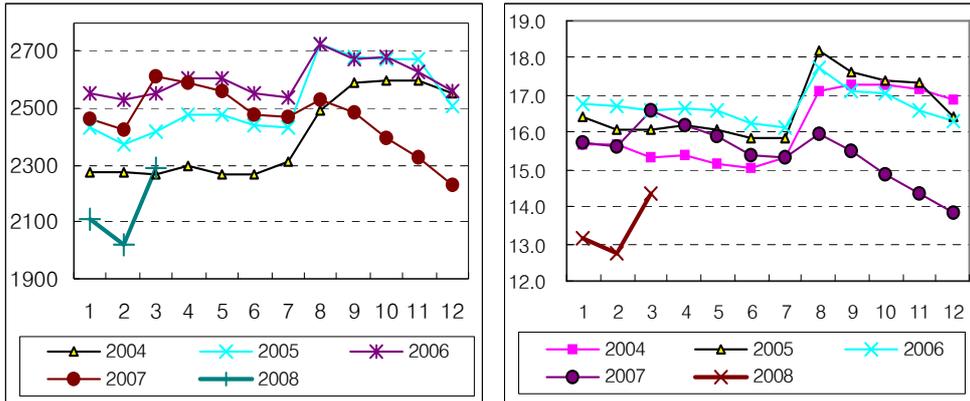
2. 기간제 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2008년 3월 2,293천 명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2,614천 명에 비해 321천 명 감소하였으며, 3월 기준으로는 2003년 1,838천 명에 비해 2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7년 3월 16.6%에서 2008년 3월 14.3%로 감소했다. 2006년 하반기 들어 시작된 기간제 근로자의 감소 경향이 2008년 들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기간제 근로의 감소는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100~299인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는 소폭 감소하여 기존 기간제 고용의 해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제가 크게 감소하여 기간제

[그림 3] 기간제 근로자(좌) 및 임금근로자 중 비중(우)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8> 사업체규모별·근속계층별 임금근로자의 기간제 고용변화

(단위: 천 명)

		2003. 1/4	2004. 1/4	2005. 1/4	2006. 1/4	2007. 1/4	2008. 1/4
임금 근로자	규모						
	1~99인	11,016	11,345 (329)	11,507 (162)	11,774 (268)	12,244 (470)	12,535 (291)
	100~299인	1,376	1,465 (89)	1,463 (-2)	1,511 (47)	1,558 (48)	1,553 (-5)
	300인 이상	1,776	1,804 (28)	1,886 (82)	1,933 (47)	1,839 (-94)	1,865 (26)
	근속 기간						
	1년 미만	5,151	5,533 (382)	5,392 (-141)	5,595 (203)	5,704 (110)	5,448 (-257)
1~2년 미만	2,001	2,331 (330)	2,346 (15)	2,255 (-90)	2,386 (131)	2,474 (87)	
2년 이상	7,015	6,751 (-265)	7,119 (368)	7,368 (250)	7,552 (184)	8,032 (481)	
기간제	규모						
	1~99인	1,569	1,892 (323)	1,935 (43)	2,044 (109)	1,979 (-65)	1,680 (-300)
	100~299인	113	199 (86)	237 (39)	257 (20)	262 (4)	240 (-22)
	300인 이상	115	182 (68)	233 (51)	242 (9)	260 (18)	221 (-39)
	근속 기간						
	1년 미만	1,288	1,367 (80)	1,332 (-36)	1,426 (94)	1,313 (-113)	970 (-343)
1~2년 미만	207	378 (172)	381 (3)	377 (-4)	385 (8)	381 (-3)	
2년 이상	302	527 (225)	693 (165)	740 (47)	804 (64)	790 (-14)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1~3월.

신규 채용의 감소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3. 비기간제의 고용형태 전환

2007년 3월 조사와 2008년 3월 조사를 개인별로 패널화하여 1년 후 고용형태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표 9>는 2007년 3월 조사시점에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동일한 고용형태에 머무르는 비중은 16.4%에 불과한 반면 52.9%가 정규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주로 정규 상용직으로 변화하였다. 즉,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들이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비기간제 고용의 고용형태 전환

(단위: %)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형태(비중)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1년 전 고용형태(비중)
정규직	(52.9)	(21.6)
정규 상용직	(46.2)	(4.1)
정규 임시직	(5.8)	(16.0)
정규 일용직	(0.9)	(1.5)
비정규직	(38.7)	(49.8)
한시적 근로	(29.3)	(37.2)
기간제	(12.0)	(7.1)
계약 반복갱신	(16.4)	(0.7)
계속근무 기대불가	(0.9)	(29.4)
시간제 근로	(3.6)	(10.0)
비전형근로	(16.9)	(14.5)
파견	(3.1)	(0.7)
용역	(7.1)	(2.6)
특수형태근로	(5.3)	(3.3)
가정내	(0.9)	(1.5)
일일	(0.9)	(7.4)
비임금근로자	(2.7)	(7.1)
비취업	(5.8)	(21.6)

주:()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또한 <표 9>에는 2008년 3월 시점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1년 전 고용형태를 보여준다. 동일한 고용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비중이 29.4%이고, 1년 전 정규직이었던 비중이 21.6%인 반면, 비정규직은 49.8%, 비임금근로 7.1%, 비취업이 21.6%이다. 즉,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80%는 불안정 고용이 지속되거나 노동시장 진입자임을 알 수 있다.

IV. 근로조건

1. 임 금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1~3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은 127.2천 원으로 작년 3월에 비해 0.1% 감소한 반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10.4천 원으로 6.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7년 64.2%에 비해 2008년 60.4%로 그 격차가 더 커졌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근로(6.6%),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6.2%), 파견근로(11.7%), 용역근로(12.8%), 특수근로(19.2%), 가정내 근로(22.6%)의 임금상승률이 정규직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정규직과 비교한 상대임금 수준이 증가한 고용형태로는 기간제 근로(72.4%, 3.2%p), 파견근로(70.4%, 8.3%p), 용역근로(54.3%, 7.2%p), 특수근로(77.1%, 16.6%p), 가정내 근로(34.7%, 8.9%p)인 반면,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93.0%, -3.5%p), 시간제근로(26.5%, -0.4%p), 일일근로(42.8%, -2.1%p)에서는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

2. 근로복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서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할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년 3월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은 -1.6%p, 의료보험 가입률은 -1.7%p, 고용보험 가입률은 -1.7%p, 감소하였다.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조건인 계약반복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1 참조). 그러나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가정내 근로 등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 또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퇴직금은 0.1%p 증가하였지만, 상여금은 -4.4%p, 시간외수당은

〈표 10〉 근로형태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1~3월 평균)

(단위: 천 원, %)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2007. 3	2008. 3	2007. 3	2008. 3
임금근로자	172.4	181.1	9.1	9.6
정규직	198.5 (100.0)	210.4 (100.0)	10.1 (100.0)	10.8 (100.0)
정규 상용직	238.6 (120.2)	247.1 (117.4)	12.4 (123.1)	13.0 (120.1)
정규 임시직	121.1 (61.0)	125.8 (59.8)	5.5 (55.2)	5.8 (53.2)
정규 일용직	88.2 (44.4)	95.3 (45.3)	4.1 (41.2)	4.5 (41.4)
비정규직	127.3 (64.2)	127.2 (60.4)	7.4 (73.2)	7.3 (67.3)
한시적 근로	144.2 (72.6)	144.1 (68.5)	7.8 (77.7)	7.8 (71.9)
기간제	142.9 (72.0)	152.4 (72.4)	7.9 (78.2)	8.4 (77.4)
계약 반복갱신	192.5 (97.0)	195.6 (93.0)	9.9 (98.0)	10.2 (93.7)
계속근무 기대불가	96.0 (48.4)	102.0 (48.5)	5.2 (51.8)	5.2 (47.7)
시간제 근로	54.2 (27.3)	55.8 (26.5)	7.3 (72.9)	6.8 (63.1)
비전형근로	108.7 (54.8)	119.1 (56.6)	6.1 (60.4)	6.5 (60.4)
파견	132.5 (66.8)	148.1 (70.4)	6.9 (68.5)	7.5 (68.9)
용역	101.3 (51.0)	114.3 (54.3)	4.9 (48.5)	5.5 (50.4)
특수근로형태	136.1 (68.6)	162.3 (77.1)	8.0 (80.0)	9.2 (84.5)
가정내	59.6 (30.0)	73.1 (34.7)	4.5 (44.6)	5.1 (46.7)
일일	89.3 (45.0)	90.0 (42.8)	5.4 (53.4)	5.4 (5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4.2%p, 유급휴가는 -1.5%p 감소하였다. 그러나 계속 근무가 기대가능한 한시적 근로자와 파견근로, 특수근로, 가정내 근로에서 기업복지 수혜율이 증가하였다.

V. 요약과 시사점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임금 일자리 성과의 부진이 비정규직법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 고용은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기존 기간제의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신규 채용의 감소에 기인했기 때문이

<표 11>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기업복지 수혜율

(단위: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임금근로자	62.6	63.5	63.9	64.8	55.6	55.6	55.9	60.0	55.5	55.8	43.2	42.6	48.0	51.0
정규직	76.0	77.6	76.6	78.2	65.4	65.6	68.9	74.3	69.5	71.2	54.3	54.9	59.9	64.6
정규 상용직	98.8	98.2	99.3	98.3	83.2	81.4	99.1	99.2	97.9	96.6	78.2	75.6	85.8	87.9
정규 임시직	32.5	30.6	33.4	32.5	31.6	30.2	9.1	16.2	13.7	11.3	6.7	5.3	9.0	9.9
정규 일용직	9.1	8.4	8.2	9.4	8.0	7.4	2.3	2.4	4.5	4.1	6.5	4.2	0.9	0.7
비정규직	39.3	37.4	41.8	40.2	38.8	37.1	33.7	33.7	31.4	27.5	24.3	20.0	27.3	25.8
한시적 근로	55.8	54.8	58.9	58.4	54.9	53.9	48.4	48.7	44.9	40.5	34.4	29.1	39.4	38.5
기간제	57.4	63.9	61.2	67.9	56.5	63.0	51.1	58.7	46.3	47.8	35.2	34.9	41.9	46.4
계약 반복갱신	83.8	79.1	85.4	79.0	81.8	76.3	74.3	75.2	72.8	75.5	57.2	48.5	58.7	65.7
계속근무기대불가	15.4	18.2	16.2	21.9	16.2	18.3	4.3	9.0	5.4	6.4	4.3	4.7	3.4	5.1
시간제 근로	2.3	6.4	3.3	7.9	2.4	6.0	1.4	4.9	3.1	4.8	2.2	2.7	2.3	2.7
비전형근로	22.0	24.2	26.0	28.4	22.3	25.7	18.9	25.2	15.4	17.0	12.2	13.5	12.8	16.1
파견	60.6	73.5	61.6	77.1	62.1	74.7	50.3	72.0	42.4	53.5	37.6	44.3	39.4	54.1
용역	56.1	58.5	70.9	74.0	57.2	63.5	52.8	63.5	39.7	39.2	33.0	30.9	33.2	38.2
특수근로형태	7.5	8.0	7.8	6.4	6.8	7.7	3.9	6.5	4.7	5.0	1.6	2.1	3.5	3.9
가정내	3.3	16.3	3.3	17.2	2.7	16.4	1.1	17.0	1.4	16.3	0.2	13.7	1.3	14.5
일일	0.9	0.7	1.0	1.3	1.2	1.9	0.2	1.0	0.9	0.8	1.2	1.5	0.1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3월.

다. 그리고 임시직의 감소 역시 정규 임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 임시직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라고도 볼 수 없다. 최근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고,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진 것은 내수 부진 및 경기 하강 우려에 따라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299인 기업에서 근속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 소폭 감소한 데에는 경기적인 요인 이외에 제도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따라서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비정규 고용의 질은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 변화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고용형태를 열악한 고용형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는 감소하였지만, 절반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고용형태로 전환하였으며,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주로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에 따른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 고용구성의 악화는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및 생산비용의 증가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주저할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시 근로조건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일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는 구성 효과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복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가구 조사의 특성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정보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등을 이용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